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93
----------	-----

제출연월일 : 2018년 10월 1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복지여건을 조성하고, 학습지원 사업을 통해 학력을 획득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 라.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별첨 1]
- 다. 협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과 협의완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18. 9. 11. ~ 10. 1.)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별첨 2]

- 교육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별첨 3]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별첨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란 학력인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

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진로교육국장, 담당 부서의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장 중 1명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전·현직 공무원

3. 서울특별시 관계자 및 관련 민간단체 임원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 밖 청소년 업무담당부서의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된다.

1.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 준비

3.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에 대해 제7조의 제1항 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직업체험 및 훈련 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안내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상담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효과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이하 “도움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움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앞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11조 제2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업무 수행
- 제7조 제1항 제3호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제2항 교육활동비 등을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운영비 : 381,000천원
-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25개 기관 지원(기관당 4,000천원)
-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200천원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						
세출	○ 센터 운영비	381,000	390,000	400,000	410,000	420,000	2,001,000
	○ 학습지원 프로그램	100,000	112,500	125,000	137,500	150,000	625,000
	○ 기본수당	480,000	7,200,000	9,600,000	12,000,000	12,000,000	41,280,000
□ 총 비용(a-b)		961,000	7,702,500	10,125,000	12,547,500	12,570,000	43,906,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보통교부금)		961,000	4,102,500	5,325,000	6,547,500	6,570,000	23,506,000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비법정 전입금)			3,600,000	4,800,000	6,000,000	6,000,000	20,400,000
합계		961,000	7,702,500	10,125,000	12,547,500	12,570,000	43,906,000

- 지원계획 인원: 2019년(200명~500명) ⇒ 2020년(3,000명) ⇒ 2021년(4,000명) ⇒ 2022년 이후(5,000명)

5. 덧붙이는 의견

-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기본수당 지급은 협력 방안에 따라 비용추계가 크게 변동 될 가능성이 있음

6. 작성자: 학생생활교육과 박기식(3999-53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학습지원 기본수당 지원내용

대상자	- 만9세~만18세의 초·중·고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중 수당지급 요건 충족자
지원인원	- 지원인원 : 200명 * 목표인원 : 500명
지원금액	- 월20만원(연240만원) / 명
지원내용 및 예산산정 내역	- 중식비: 84,000원 = 7,000원(1식) × 3일 × 4주 - 교통비: 24,000원 = 1,000원 × 2회(왕복) × 3일 × 4주 - 교재 및 도서 구입비: 30,000원 - 문화체험비: 20,000원 - 온라인학습비 등: 50,000원
예산총액	- 480,000천원(2019년) * 지원인원 초과 시,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p>창동고등학교 행정실장 박영숙</p>	<p>○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실 제 업무 관련자로 확대하여 현실적인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u>전·현직 교원</u> → <u>전·현직 교직원</u></p>	<p>○ 반영 -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에 관심과 경 험을 갖추고 있는 인력 참여가 가능하도 록 교원으로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	행정6급	박 동 환
입 안 주 무 부 서	학생생활교육과	통보(조치)일	2018.10.1.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조~제12조	<p>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 교육복지여건을 조성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추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p> <p>「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이거나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거나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 혹은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부패영향평가 기준 중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p> <p>⇒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안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선권고” 함</p>		<p>“개선권고”</p>

【별첨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서울교육015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학생생활교육과		
	담당자명	박기식	전화번호	02-3999-537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9월 2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학생생활교육과)	이번 관련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 도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수정안 내용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2018년 09월 20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혜주/02-3999-306) </div> 학생생활교육과장 귀하				

【별첨 5】

관계법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706호, 2017.3.21.,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3호, 2017.3.21., 일부개정]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 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